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4.

발 의 자 : 조정훈 · 최수진 · 서천호

정성국 · 김용태 · 조경태

김대식 · 인요한 · 김미애

김장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, 신학 대학 등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·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실제로 많은 종교대학들은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교육과정 상 종교교육, 종교음악,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에도, 종교지도자 ‘양성만을’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이라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예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함.

이에 “양성만을”을 “양성을”로 개정함으로써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

소하고, 종교교육기관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4항 단서).

법률 제 호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4항 단서 중 “양성만을”을 “양성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임원) ① ~ ③ (생략)	제14조(임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의회(이하 “대학평의의회”라 한다)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학교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,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<u>양성만을</u>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·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양성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· ⑥ (생략)	⑤ · ⑥ (현행과 같음)